

예비후보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의 후보자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 결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의 위헌을 판시사항으로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능했던 지방의원 등이 가능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후원 모금금액 역시도 선거자금 제한액의 50%로 한정된다. 이러한 제약은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4년 지방의회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후원회지정권을 인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헌법재판소, 2022)

제약뿐만 아니라, 혁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사회 | 정치 | 경제 | 문화 | 아름다움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목적이 있다(현재 2000만명
높이고 의회 의정활동의

무엇보다도
고려한 개

현황(실태/문제점)

후원회제도의 법적 근거

```

graph LR
    A[정치자금 제공자] --> B[종 류]
    B --> C[경유기관]
    C --> D[정치자금 수요자]
    D --> E[정치자금회계 공개]
    
    B -- "후원금" --> F[후원회]
    F --> G[정당]
    G -- "국회의원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 등" --> H[회계보고드]
    H --> I[선거관]
    I -- "기타금" --> B
  
```

The diagram illustrates the political funding system in South Korea. It shows the flow of funds from providers to users through various channels, including political parties and campaign finance committees.

- 정치자금 제공자 (Political Fund Provider):** This category includes individuals (개인) and other entities.
- 종 류 (Type):** This stage involves different types of political funds, such as 후원금 (Contribution), 기타금 (Other Funds), and 정부지원금 (Government Support Funds).
- 경유기관 (Transit Institution):** This stage involves political parties (정당) and campaign finance committees (후원회).
- 정치자금 수요자 (Political Fund User):** This stage involves political parties (정당) and candidates (국회의원,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 등).
- 정치자금회계 공개 (Political Campaign Finance Disclosure):** This stage involves disclosure reports (회계보고드) and election officials (선거관).

The diagram illustrates the flow of campaign funding. It starts with three colored ovals on the left: a blue one labeled '개인' (Individual), a green one labeled '국가' (Country), and a cyan one labeled '당원' (Party member). Arrows point from each of these to a central light blue vertical rectangle labeled '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From this central box, arrows point to two grey rounded rectangles, each containing a white circle labeled '정당' (Political Party). Finally, arrows point from these two grey boxes to a large light blue vertical rectangle on the right labeled '국회' (National Assembly) with the subtitle '(공고) (열람) (의신청) (조사확인)' (Announcement, Inspection, Application for Inspection, Investigation).

제1조). 또한 후
받을 수 없으며
하며, 정치자금

- 「정치자금법」의 연혁과 특징
1965년 2월 9일 법률 1685호로 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산업·경제인 기타 일반인이나 단체가 정당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최초로 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도입하여 누구든지 기명 또는 익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고, 2 이상의 정당을 지정하여 기부 경우에는 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지정기탁금제)
- 기부의 주체와 기부금액의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은 물론 단체도 자유롭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있었으나, 정치인 개인에 대한 후원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정치자금의 조달은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05년 「정치자금법」으로 개칭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상 후원회와 관련된 것은 2023년 7월 말 현재, 2번 전부개정과 18번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후원인이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이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 「정치자금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Interview)를 통하여 조사한
만족도는 평균 이하이지만

이를 통해 후원회의 ‘모금규모’와 ‘모금기간’은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한편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 고려할 때, 만족도가 낮아지거나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는 시기에 보다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후원회제도 개선안에 대한 분석

항목	만족도	중요도
모금기간	2.00	4.02
모금규모	2.08	4.15
지출항목	2.20	3.84

구 분		정치인	전문직	공무원	합 계	
후원회 (모금기간, 모금규모, 지출항목) 개선 필요성	필 요	8	26	15	49	
		16.3%	53.1%	30.6%	100.0%	
		80.0%	86.7%	71.4%	80.3%	
	불필요	1	0	1	2	
		50.0%	0.0%	50.0%	100.0%	
		10.0%	0.0%	4.8%	3.3%	
	모 름	1	4	5	10	
		10.0%	40.0%	50.0%	100.0%	
		10.0%	13.3%	23.8%	16.4%	
전 체		10	30	21	61	
		16.4%	49.2%	34.4%	100.0%	
		100.0%	100.0%	100.0%	100.0%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50%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

구 분	정 치 인	전문 직	공무원	합 계
후원금 한도 개선안	현재안 적절	1	3	6
		10.0%	30.0%	60.0%
		10.0%	10.0%	30.0%
	1안 5천만 원~1억 원	9	21	12
		21.4%	50.0%	28.6%
		90.0%	70.0%	60.0%
	2안 직접기입	0	6	2
		0.0%	75.0%	25.0%
		0.0%	0.0%	10.0%

	10	30	20	60
전체	16.7%	50.0%	33.3%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제도 개선

‘국회의원의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75.5%였음(소순창 외, 2021:101). 비율은 29.3%이었음(소순창 외, 2021:101). 비율은 50.9%이고, 업무량이 ‘비슷하다’(50.5%)

49.1%이었음(소순창 외, 2021:101). 이를 고려하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원도 이와 같은 비율에 따르면 최소한도의 금액을 보전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금 한도액을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현행 선거비용한도액의 50/100보다 더 전향적 방향으로 개선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후원금 비율을 70대 3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액은 매년 1억 5천만 원과 선거년도에는 그 2배인 3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총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 5천만 원의 30%인 2억 5천만 원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금 한도액으로 지정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금은 매년 5천만 원과 선거년도에는 그 2배인 1억 원, 총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구 분	후원금 한도 개선안
현재안 적절	16.7
1안(5천만 원+1억 원)	70.0
2안(직접 기입)	13.3
합 계	100.0

국회 국회의원을 위한 지원금은 개인화되고 있지만, 어려운 지역에 미아어 난국, 세정국, 불국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소순창 외, 2021:102). 그러므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원 정도로 대폭 확대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무소의 운영 지원 경비,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경비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또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결정하는 것
5천만 원으로

- | 구 분 | 국회의원 | 광역의회의원 | 후원금 규모 |
|-----------|----------|----------|--------------------|
| 매년 후원금 |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국회의원 후원금의
약 30% |
| 선거년도의 후원금 | 3억 원 | 1억 원 | |
| 합 계 | 7억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

[참고문헌] 고인석. (2017). 광역시도의회 의원후원회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17(1): 331–352.

「기도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자료」
제도 개선 과제 및 경기도의회의 역할』, 경기도

- 조준경 외. (2023). 시장의회 후원회제도에 관한 학술논문적·민국시정사지연구, 29(2).45~70. 대전시정사지학회.
- 신원득·문현미. (2017). 「지방의회 후원회제도의 도입과 전망」.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7-19.
- 이현출. (2005). 지방정치 부패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입법정보」, 166. 국회도서관.
- 인사이트. (2021.7.29.).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만 28세' 류호정 의원이 매년 받는 '연봉' 수준 <https://www.insight.co.kr/news/350977> (검색일: 2023.7.7.)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선거통계시스템(선거인 수 현황),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6회 지방선거.
- ______. (2016a).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 ______. (2016b). 정치자금 회계실무(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
- ______. (2016c). 2015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 ______. (2015). 2014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 ______. (2013). 정치자금 조달 방법 및 투명성 확보 방안.

- _____.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 헌법재판소(<http://search.ncc.go.kr>)